

1.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 인력 1명(7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통계개발원에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 작성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9급 1명), 지방통계

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3명”을 “2명”으로,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를 “사서주사보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7장(제15조)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3”을 “685”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7”을 “149”로 하고,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1”을 “202”로 하며,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9”를 “78”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87”을 “688”로 하고, 일반직 계 “686”을 “687”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사서사무관 “149”를 “151”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0”을 “201”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9”를 “78”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을 각각 “32”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를 “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29”를 각각 “1,416”으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8”을 “25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6”을 “402”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03”을 “498”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20”을 “11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30”을 각각 “1,416”으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5”를 “27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5”를 “401”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87”을 “482”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21”을 “118”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7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89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
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24조)
및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6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통계교육원 정원 1명(5급 1명), 지
방통계청 정원 13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 통계개발원 정
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
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 2의 정원 중 <u>3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2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 2와 같으며, 별표 5의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생략)

제7장 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명)은 중소기업부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삭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84</u>		<u>686</u>	+2	
일반직	.	계	.		.		
	.		.		.		
	.		<u>683</u>		<u>685</u>	+2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147</u>		<u>149</u>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201</u>		<u>202</u>	+1	
	.		.		.		
	.		.		.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79</u>	<u>78</u>	-1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87	688	+1
일반직 계	686	687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149	151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0	201	+1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9	78	-1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3</u>	<u>2</u>	-1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33</u>	• <u>32</u>	-1
일반직 계	<u>33</u>	<u>32</u>	-1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9</u>	<u>8</u>	-1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29</u>	<u>1,416</u>	-13
일반직 계	<u>1,429</u>	<u>1,416</u>	-13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58</u>	<u>256</u>	-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06</u>	<u>402</u>	-4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u>503</u>	<u>498</u>	-5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120</u>	<u>118</u>	-2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30</u>	<u>1,416</u>	-14
일반직 계	<u>1,430</u>	<u>1,416</u>	-14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75</u>	<u>273</u>	-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05</u>	<u>401</u>	-4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u>487</u>	<u>482</u>	-5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121</u>	<u>118</u>	-3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2	53	+1
일반직 계	52	53	+1
3급 또는 4급 이하	51	52	+1